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9. 5. 10.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9. 5. 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김 영 남

가.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정비 시책과 연계하여 동 조례중 과도한 규제조항 및 현실과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기금조성 재원중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내용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과 배치되어 이를 삭제함(안 제3조 제4호).
- 학자금 용자대상자중 「학교성적 제한」을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는 반에서 30퍼센트 이내, 실업계는 반에서 50퍼센트 이내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대체하고, 대학생은 "B"학점을 "C"학점으로 완화함(안 제4조 제3항).
-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한 용자금 제외규정은 용자금 대출시 보증인을 선정하여 상환이 보증되므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서 이를 삭제함(안 제4조 제4항).
- 용자 한도액중 소득자금은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안정자금은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7조 제1항).

- 용자금 대부신청자격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3년이상, 당해동 관할구역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자”를 “서울특별시 3년이상, 마포구 관할구역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자”로 완화하여 조례에 명시함(안 제8조 제1항).
- 현행 조례상 용자금 대부신청의 보증인 선정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주지와 세대주 제한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함(안 제8조 제2항).
-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이전에 제출하던 것을 20일 이전으로 규제를 완화함(안 제12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적합치 않은 규정 등을 정비·보완함으로써 동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호에서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배치되어 기금으로 조성할 수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학자금용자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인문계는 반에서 30%이내 실업계는 반에서 50%이내의 학생이 해당되었으나 성적제한을 없애고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B” 학점이상에서 “C” 학점이상으로 완화하였음.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소득자금은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하고, 안정자금은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용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용자금 대부신청 조건을 서울시에 3년이상, 당해동관할구역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만 대부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조건을 완화하여 서울시에 3년이상, 마포구관할구역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명시하였으며, 연대보증인도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제한하였으나 안 제8조 제2항에서 연대보증인도 거주지와 세대주 제한을 삭제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동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동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세창 위원) : 각동 저소득 주민들은 실제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일부 특정인만 용자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구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며, 또한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도 저소득 주민에게는 어려운 실정임.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차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저소득 주민이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증인 2명을 세우는 문제도 그간 상당히 강화되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보증인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음.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기 용자금 체납액 2억 5,300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체납자중에는 생계곤란자, 사망자, 국외이주자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 바, 체납자에 대한 재산전산조회를 의뢰했으나 아직 조회결과는 아직 안 나옴.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실제 용자가 꼭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이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 답변요지(이춘기 행정관리국장) : 저소득 주민이 손쉽게 용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선정등의 문제점을 본 개정조례안에서 상당히 완화하도록 하였음.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장) : 용자금 미상환액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96년도 이전 체납은 우리구에서 체납처분하며, '96년도 이후 체납은 은행에서 처분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9.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정비 시책과 연계하여 동조례중 과도한 규제조항 및 현실과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 가. 기금조성 재원중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 내용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과 배치되어 이를 삭제함(안 제3조 제4호).
- 나. 학자금 용자대상자중 「학교성적 제한」을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는 반에서 30퍼센트 이내, 실업계는 반에서 50퍼센트 이내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대체하고, 대학생은 "B"학점을 "C"학점으로 완화함(안 제4조제3항).
- 다.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자에 대한 용자금 제외규정은 용자금 대출시 보증인을 선정하여 상환이 보증되므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서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4항).
- 라. 용자한도액중 소득자금은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안정자금은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7조제1항).
- 마. 용자금 대부신청자격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3년이상, 당해동 관할 구역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자"를 "서울특별시 3년이상, 마포구 관할구역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자"로 완화하여 조례에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바. 현행 조례상 용자금 대부신청의 보증인 선정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주지와 세대주 제한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함(안 제8조제2항).

사.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할 경우 해당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이전에 제출하던 것을 20일 이전으로 규제를 완화함(안 제12조제3항).

3. 개정근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1호) 제5조
-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74호) 제110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제2항의 제3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융자신청 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 (평균 "C"학점 이상)인 자로서 각각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하되, 대학입학생은 학기중 성적이 없을 경우 학과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

제7조제1항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8조제1항중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을 "서울특별시에 3년이상, 마포구 관할구역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자금을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 (기금의 조성) (생략)</p> <p>1.~3. (생략)</p> <p>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기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수입</p>	<p>제3조 (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p>
<p>제4조 (융자대상) ①~② (생략)</p> <p>③제2항제3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지급기준 전분기)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반에서 30퍼센트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반에서 50퍼센트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 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p> <p>⑤ (생략)</p>	<p>제4조(융자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제3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융자신청 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평균 "C"학점 이상)인 자로서 각각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하되, 대학입학생은 학기중 성적이 없을 경우 학과장의 추천서로 같음 한다.</p> <p>④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1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2천만원..... 1천만원.....</p> <p>②(현행과 같음)</p>
<p>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p> <p>③(생략)</p>	<p>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서울특별시 3년이상, 마포구 관할구역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p> <p>②.....(삭제)</p> <p>(삭제)</p> <p>③(현행과 같음)</p>
<p>제12조(융자금의 상한기한 연장)①~②(생략)</p> <p>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한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⑤(생략)</p>	<p>제12조(융자금의 상한기한 연장)①~②(현행과 같음)</p> <p>③..... 20일전.....</p> <p>④~⑤(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지도·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제15조(지도·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① (생략)</p> <p>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p> <p>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p> <p>3.~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6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① (현행과 같음)</p> <p>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p> <p>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p> <p>3.~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9. 5. 12

제안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자로 부터 입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원가보상율을 제고하고, 마포구 재원확충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1건당 3,000원을 징수함

[안 별표 제2호 나목 (8)]

나. 100만원이상 수의계약 수수료를 3,000원으로 징수하도록 신설

[안 별표 제2호 나목 (9)]

3. 참고사항

가.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제13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에서 2.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중 (8)입찰참가 신청”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현행				개정안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8)입찰참가 신청	1건	550원		(8)입찰참가 신청	1건	3,000원	

(9)내지 (18)을 (10)내지 (19)로 하고, “(9)수의계약”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행				개정안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신설)				(9) 수의계약	100만원이상	3,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운 대비표

현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 (7) (생 략)	(생 략)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입찰참가 신청	1 건	550원		(8) 입찰참가 신청	1 건	3,000원	
(신 설)	(신 설)	(신 설)		(9) 수의계약	100만원이상	3,000원	
(9) ~ (18) (생 략)	(생 략)	(생 략)		(10)~(19) [현행 (9)~(18)과 같음]			